

[다인용]

지점효율 지급(공제) 사실확인서

각 공제대상자(FA)와 각 지급대상자(FA)는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에 대한 자신의 금전채권(세부 내용은 아래의 4. 양도인(공제자), 양수인(지급자) 및 각 채권의 표시' 양식 참조)을 해당 양식에 서명 및 기명날인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양도, 양수하고, 최고관리자(FA) 등 확인자는 본 채권 양도가 사실임을 보증하고 아래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.

1. 지급일

각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(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)로 한다. 각 당사자는 매달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1일(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) 전날까지 본 약정서가 회사 전자업무시스템에 첨부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경우, 본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, 대상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양해한다. 단 회사의 선택에 따라 그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.

2. 손해배상 및 상계 약정

아래와 같은 각 사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 관련 회사가 이중 지급 등 순해 발생의 위험에 처하거나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, 각 공제대상자, 각 지급대상자 및 확인인들은 양도 대상 금전채권 동일액을 회사에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고, 이와 별개로 회사는 각 당사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위험 해소 및 손해 전보 전까지 지급을 유보하거나 즉시 청구, 사전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.

- ① 본 약정의 전체 또는 부분, 양도 대상 채권의 각 해제, 해지, 무효, 취소, 부존재 및 불성립
- ② 각 공제대상자의 보험 모집 행위의 하자 등 보험업법, 금소법 위반행위, 파산, 회생, 민사집행법상 강제 집행, 분쟁(민원, 소 제기) 발생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각 당사자의 당사에 대한 채무의 발생

3. 본 약정의 해제, 해지의 경우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.

4. 양도인(공제자), 양수인(지급자) 및 각 채권의 표시

(단위: 원)

번호	시작월	종료월	금액 (월 지급액)	양도인			양수인			비고
				공제 대상자	사번	서명	지급 대상자	사번	서명	
1	26 1월	26 1월	97,500	공원배	2531929	공원배 (명)	송정훈	2433519	송정훈 (인)	
2	26 1월	26 1월	82,500	박용호	2433520	박용호 (인)	송정훈	2433519	송정훈 (인)	
3	26 1월	26 1월	194,865	김아름	2438805	김아름 (인)	송정훈	2433519	송정훈 (인)	
4	26 1월	26 1월	165,000	허미정	2134396	허미정 (인)	송정훈	2433519	송정훈 (인)	
5	26 1월	26 1월	240,000	박용호	2433520	박용호 (인)	이내연	2531914	이내연 (인)	
6	26 1월	26 1월	160,000	송정훈	2433519	송정훈 (인)	이내연	2531914	이내연 (인)	
7	26 1월	26 1월	80,000	김아름	2438805	김아름 (인)	허미정	2134396	허미정 (인)	
8	26 1월	26 1월	80,000	송정훈	2433519	송정훈 (인)	허미정	2134396	허미정 (인)	
9						(인)			(인)	
10						(인)			(인)	

2026년 1월 20일

확인자 최고관리자 : 

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담당자 귀중